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 호 398

2024. 10. 1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30. 김진경 의원 등 10명
-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1.)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김진경 의원)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경비 부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서용)

가. 조례안 취지

○ 본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 지방자치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검토내용

- 「지방자치법」 제193조¹⁾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47조²⁾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2023년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 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국내 31개 도시와 국외 10개 도시와 친선(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음.

[따로붙임 1] 강남구 국내·외 친선(우호)도시 체결현황

¹⁾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u>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u> <u>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u> 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²⁾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2024년 강남구는 '국내외 도시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6,158 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연 2회의 출장과 연 3회의 초청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강남구의회의 주도로 진행하는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과 관련된 규정은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사업예산은 업무추 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의정교류 활성화' 716천원이 전부임.

[따로붙임 2] 강남구의회 의정교류 현황

- 따라서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의회 역 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교류협력의 대상을 지방의회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93조를 근거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민간기관이나 국제 비정부기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조례 제명	수정검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u>지방의회</u>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u>간</u>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참고로 2024년 9월 기준 36개의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는 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시흥시의회와 파주시의회, 충 주시의회에서는 교류협력의 대상을 지방의회뿐 아니라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1조) 교류협력의 대상을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조례안	수정검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
와 국내외 <u>지방의회 간</u> 교류협력	와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
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	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입안자의 입법 의도가 우선적으로 지방의회 간의 교류 협력에 초점을 두려 한 것이라면, 그 의도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 교류협력의 정의를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으로 하고 이를 축약하여 이하 모든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조례안	수정검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강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와 국내외 <u>지방의회</u> 간 친선결 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 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 외 <u>지방의회</u> 간 상호 공동 관심 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 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지방자치단체등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 (안 제7조) 단일 항의 항 번호는 삭제해야 하지만 교류협력의 대 상을 확대하는 수정을 고려한다면 각 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항을 신설할 것을 검토할 수 있음.

조례안	수정검토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① 의장은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
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	3.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
문 등 비교 견학	문 등 비교 견학
<신설>	4.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국

<신설>

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u>의회 간</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기구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 호 이해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 동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의회가 추진하는 교 류협력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 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 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 비 규정」에 따른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u>강남구의회가 주도적으로 국내외 교류협력을 확대</u> <u>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u>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특히, 근거 조례가 없고 관련 사업과 예산이 미비한 상황에서 향후 강남구의회가 주도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 다만, 교류협력의 대상을 지방의회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인 등이

참여 시 경비 예산의 지원, 교류협력의 내용에서도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파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내용이 빠져있어 향후 강남구의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고려 할 때 대상 확대와 교류협력 내용의 수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 다고 사료됨.

-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7. **토론 요지**: "생략"
-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10.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98호

제안일자: 2024. 10. 11.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교류협력의 내용에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제공과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조문 일부 문구 수정(안 제6조)

나. 교류협력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 금·구호물품의 지원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 ① (생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친선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②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	
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	
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	
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	
으로 <u>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u>	<u>한다</u> .
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① 의장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	
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u> <신 설></u>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u>상호 정보 제공</u>
1. ~ 3. (생 략)	2 . \sim 4 . (현행 제 1 호부터 제 3 호
	까지와 같음)
<u> <신 설></u>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
	<u>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u>
	<u>원</u>
4. (생략)	<u>6</u> . (현행 제4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 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 다.
-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검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 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 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 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친선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

- 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 금·구호물품의 지원
-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부담) 친선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친선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친선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등을 취소할 수있다.
 -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 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 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친선 결연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